

인권단체와의 정책간담회

□ 간담회 개요

- 일시 : 2009. 1. 20.(화) 13:30~17:50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1부 : 11층 배움터)

□ 진행 순서

구 분	시간	내 용
1부	13:30~13:40	개회, 참석자 소개
	13:40~13:45	인사말(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13:45~14:30	인권증진행동계획 및 '09년 사업계획(안) 설명
	14:30~15:40	질의·응답
휴식	15:40~16:00	휴식 및 장소 이동
2부	16:00~17:50	분야별 간담회
만찬	18:00~	장소 : 갯마을 낙지

□ 분야별 간담회 장소

구 분	장 소	주 재
인권정책본부, 인권교육본부	배움터(10층)	최경숙 상임위원 (정책본부장, 교육본부장)
차별시정본부	배움터(11층)	문경란 상임위원 (차별시정본부장직대)
침해구제본부	사무총장실 회의실(12층)	유남영 상임위원 (침해구제본부장)



08년도 업무평가 및 09년 업무계획

2008. 12.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총괄팀**

목 차

총평	1
가. 사업별 평가	4
1) 행정대집행 관련 법령 제도 실태조사	
2) 학생인권증진을 위한 사례발표회 및 청문회 개최	
3) 고문방지협약선택의정서 비준에 따른 방문조사 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	
4) 총괄 기획 및 본부 지원 사업 강화	
나. 2009년도 업무계획	10
1) (2-1-①) 학교폭력 예방 및 학생 안전권 확보	
2) (2-1-②) 학교 운영에 학생 참여와 학생 자치권 보장	
3) (1-4-①) 개인정보 보호 수준 향상을 위한 정보인권 기준 수립	
4) (1-4-②) 지자체의 CCTV 설치 운영 및 그 실태조사	
5) (일반사업) 사법 기관 강제집행과정에서의 인권침해 개선 방안	
6) (일반사업) 조사시스템 개선으로 조사의 신뢰성 확보	
〈붙임 1〉 2008년도 진정사건 처리 실적	23

1. 침해구제총괄팀

□ 08 팀 사업과제

- 행정대집행 관련 법령·제도 실태조사
- 학생인권증진을 위한 사례발표회 및 청문회 개최
- 정보인권 관련 단체 협력 강화 및 쟁점 토론 워크숍 개최(정책총괄팀 이관)
- 고문방지협약선택의정서비준에 따른 방문조사 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
- 총괄 기획 및 본부 지원 사업 강화
- 국가기관·지자체 관련 진정사건 조사 및 구제

□ 총평

- 08년은 신정부 출범으로 여러 분야에 걸쳐 기존의 정부 정책에 있어 상당한 변화가 있었음.
 - 우리 팀과 관련하여 변화된 정부 정책은 크게 교육과학기술부의 「4.15 학교 자율화 추진 계획」 조치에 따른 교육과학기술부 및 각급 시·도 교육청에서 정책 변화와 2008. 2월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정부 내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주무부서화로 볼 수 있음.
 - 이러한 정책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12월 말 경에는 '학생인권 과제 발굴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개인정보 침해 관련된 진정사건을 적극 처리하는 동시에 12월에는 호주·뉴질랜드 등 개인정보기구가 설치된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그 설치 및 권한, 사건처리 절차 등을 학습하는 기회를 가졌음.
- 우리 팀 소관인 기타 국가기관 및 지자체 관련 진정 사건의 08년 처리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약 15%(546건→629건) 정도 그 처리를 증가시켰으며, 이러한 처리 결과에 따라 그동안 장기미결로 누적되어 왔던 사건 중 1년 이상 장기 미제 사건을 46건에서 2건으로, 9월 이상 1년 미만 장기 미제 사건을 24건에서 1건으로 감축시키는 등 총 9월 이상 장기 미제 사건은 2008. 12. 9. 기준 3건으로 감축시키는 성과가 있었음.
- 위와 같은 진정사건 신속처리와 더불어 학생 두발규제 등 학생 인권 이슈에 대하여 학교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조사와 더불어 교육적 효과를 달성하였으며, 국가기관 및 각급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에 있어서도 같은 조사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 대한 인권 교육도 병행하는 성과가 있었음.

- 기획사무의 경우에는 08년 4월 정기인사에 따른 신규 조사관의 업무능력의 지속적 배양 필요, 누적 진정사건의 집중 처리, 국회 개원에 따른 총괄적 대응 등 현실적 어려움으로 당초 기획 사무를 제대로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으나,
- 기획사무의 중요성에 부응하기 위하여 상반기에는 긴급구제, 사회 중요 사안에 대한 의견표명 등 중요 사건을 적기에 처리하였으며,
- 주기적인 사건처리 실적 추이를 분석함으로써 하반기에는 본부 내 1팀(군·검·경찰 담당)·3팀(다수인보호시설 담당)의 사건 중 일부를 배정받아 처리하였고, 총괄 부서로서 역할을 적절히 수행하였다고 볼 수 있음.

□ 2008년 주요 사업의 처리 실적 평가

1) 행정대집행 관련 법령·제도 실태조사

- 행정대집행 추진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요소 파악, 그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기초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2008. 12. 23. 쟁점 간담회 개최)이며, 제안된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공유하여 국민 권리구제 강화 도모

2) 학생인권증진을 위한 사례 간담회 및 기획조사

- 두발규제, 체벌 등 학교현장에서 발생하는 주요 인권침해 진정에 대하여 그동안 개별적으로 권고 등의 조치는 취하여왔으나, 동일 유형의 진정접수가 계속됨에 따라 제도적 검토 등을 통한 사회적 공론화 및 학교인권 향상 도모
- 학생인권 진정 사례집 발간, 전문가 초청 간담회 실시 등을 통해 학생 인권 현안을 재정립함은 물론 차년도 학생인권 증진을 위한 토대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었음.

3) 정보인권 관련 단체 협력 강화 및 쟁점 토론 워크숍 개최(정책총괄팀 이관)

※ 정책총괄팀과의 중복된 사업으로서 실무적으로 긴밀한 협조 하에 추진하기로 하고 동 사업은 정책총괄팀에서 주관하여 추진 합의

4) 고문방지협약선택의정서비준에 따른 방문조사 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

- 당초 국제고문방지협회의 기술지원을 받아 사례중심으로 실시하기로 기획하였으나, 위 기관의 자료집 발간이 지연되어 동 사업을 2009년도에 이월하여 실시하기로 함.

※ 2009년도에는 혁신인사팀에서 담당하기로 합의함.

5) 총괄 기획 및 본부 지원 사업 강화

- 본부 내 총괄 부서로서 각 팀이 유기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현재 내재하고 있는 문제점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사건처리 실적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어 왔음.
- 이러한 시각에 입각하여 「인권지킴이 운영 지침」 제정, 「권고한 진정사건의 사후관리 강화 계획」 수립, 「진정사건 처리 지연 안내문 개정」 등 총괄적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적기에 처리하였고, 「월별 사건처리 실적 분석」, 「월별 장기미결사건 처리 실적 분석」, 「중요사건 관리」 등을 통하여 정확한 사건처리 분석을 도모하였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1팀 및 3팀 사건의 재조정의 필요성을 이끌어 내어 본부 내 모든 팀이 사건의 균등 분배 및 그 처리의 효과성을 제고하였음.
- 또한 “육군 전환 요청 전경 사건(이계덕 상경) 긴급구제”, “촛불집회 관련 복무 거부한 의경에 대한 긴급구제(취하)”, “전주 우석고 수업중 경찰 조사 관련 사건 권고”, “촛불집회 관련 학생·청소년 집회 및 표현 자유에 대한 입장표명” 등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에 대하여 시의 적절하게 대응·처리함으로써 총괄 부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음.
- 이외에도 맞춤형 본부 조사관 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 2개 소위 운영, 국회 총괄, 통계관리 등 총괄 부서로서의 상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였음.

6) 진정사건 조사

- 진정사건 처리: 629건(07년 : 546건) : 전년 대비 83건 처리 증가
- 처리사건 중 인용 건수: 50건(07년: 36건) : 전년 대비 14건 인용 증가
- 처리사건 중 조사중 해결: 127건(07년 : 84건) : 전년 대비 43건 처리 증가
- 종결사건 평균 소요일수: 140일(07년 : 113일)
 - 장기미결사건 집중처리와 1·3팀 사건의 추가 배정으로 사건처리 평균 소요일수가 장기화된 경향이 있음.
- 계류 중인 장기미결사건 수(9월 이상): 3건(07년 : 70건) : 전년 대비 67건 감소
 - 9월 이상 1년 미만 23건 감축, 1년 이상 44건 감축(9월 이상 총 67건 감축)

가. 사업별 평가

1. 행정대집행 관련 법령제도 실태조사

□ 추진배경 및 목적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행정대집행과정에서 주민과 갈등사례가 속출하고 있고, 이와 관련된 진정사건이 위원회에 접수되고 있으나, 조사대상의 한정으로 인해 실질적인 권리구제의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관련 법·제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자 함.
- 이를 통해 관련 법규의 보완을 모색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행정대집행 관련 각종 법규 수집, 분석 등 실태조사
- 행정대집행 관련 위원회 진정사건 유형 및 처리결과 분석
- 쟁점 정리 및 대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초청 간담회

□ 성과의 목표

- 행정대집행 관련 법령제도 실태조사
- 간담회 개최

□ 08년도 추진 실적

- 실태조사 계획안 작성
- 행정대집행 관련 각종 법규 수집, 분석 등 실태조사
- 행정대집행 관련 위원회 진정사건 유형 및 처리 결과 분석
- 쟁점 정리 및 대안마련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개최(2008. 12. 23.)

□ 평가

- 행정대집행 업무의 실태 및 문제점 파악
-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기초실태조사

□ 2009년 업무추진시 참조사항

- 간담회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실시

2. 학생인권 증진방안 마련을 위한 사례간담회 및 기획조사 추진

□ 추진배경 및 목적

- 과도한 학생두발 규제, 체벌 등 학생인권 관련 진정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동 사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미진한 실정에서 사회적 공론화 및 이슈화 필요
- 특히, 신정부 4.15 자율화 조치 등에 따라 학생인권 문제가 현안인권 문제로 대두되는 현실에서 적극적 인권위 역할 모색
- 그동안 진정사건 중심의 1회성 처리보다는 보다 제도적인 근본적 문제점을 분석·검토를 통한 정책·제도·관행적 권고안을 마련하여 학생인권보호 및 향상에 기여

□ 주요내용

- 학생인권 침해 진정사례 분석
- 전문가 및 관련단체, 학생으로부터 의견수렴 및 자료확보를 위한 간담회 개최
 - 교총, 청소년인권단체, 학부모단체, 학생 등
- 기획조사(실태조사) 추진 : 1~2회 시범적으로 추진
- 전문가 자문 및 보고서 작성

□ 성과의 목표

- 학생인권 침해사례 진정사건 분석
- 관계자 토론회 및 간담회 개최

□ 08년도 추진 실적

- 실태조사 계획안 작성, 학교교육정책협의회 상정·논의(시도교육청, 9.30)
 - 학생인권 진정사례 분석
- 학생 현안인권 파악 및 논의를 위한 전문가 등 초청 간담회 개최(12.12. 6개단체)
- 학생인권 현안사항 파악 및 논의 내용 분석 보고
- 차년도 학생인권 실태조사 기획안 검토 및 준비

□ 평가

- 전문가 및 관련단체 간담회 계획대로 추진
- 2009년도 학교폭력 등 본격 실태조사 및 제도검토를 위한 토대 구축
- 금년도 1~2개 자치단체에 대해 실태조사를 시범적으로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기반구축 및 토대마련 후에 추진하는게 좋겠다는 위원회 내부의견에 따라 2009년도로 연장 추진 계획임.

□ 2009년 업무추진시 참조사항

- 전문가 간담회에 따른 수렴된 의견 및 논의내용을 토대로 2009년도 세부사업계획 마련

3. 고문방지협약선택의정서 비준에 따른 방문조사 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

□ 추진배경 및 목적

-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에 약속한 고문방지협약선택의정서 비준을 앞두고 독립적 국가예방기구로서 역할 수행을 위해 국제기준이 정하고 있는 방문조사 기법 및 절차를 살펴봄으로써 조사관의 조사역량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관련 국제 전문기구인 APT(국제고문방지협회)의 기술지원을 받아 사례중심으로 워크숍 실시
 - 2006년도에 실시한 워크숍 자료집 보완편을 적극 활용

□ 성과의 목표

- 방문조사 역량 강화

□ 08년도 추진 실적

- 기금 및 자료 등 기술지원을 약정한 APT에서 위 사업의 교재로 사용하기로 한 2006년 이후 보완·증보된 자료집이 2008. 7. 발간 예정이었다가 11~12월로 늦어지고, 이와 함께 2008년 사업지원 기금 요청 및 선정기간도 만료됨에 따라 사업실시 연기 요청이 있었고, 이에 2009년도에 협의하여 실시하기로 함.

* 2009년도 교육 실시 관련 공문 발송(혁신인사팀 접수, 검토)
2009년도에는 혁신인사팀에서 담당하기로 함

□ 평가

- 없음

□ 2009년 업무추진시 참조사항

- 혁신인사팀에서 APT와 사업기금 및 기술 지원 협의, 실시

4. 총괄 기획 및 본부 지원 사업 강화

□ 추진배경 및 목적

- 침해구제본부 소관 업무의 팀간 유기적·통합적 수행을 도모하기 위한 총괄적 지원 기능 활성화 필요
- 진정사건 등 처리에 있어 당면하고 있는 제도 개선, 문제점 등을 적시에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함으로써 업무의 적시성 도모
-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에 대하여 위원회 안팎의 신속하고 시의 적절한 처리 요청에 부응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인권지킴이 활동과 관련된 일원화된 지침 수립
 - 인권지킴이 운영 체계, 활동 가이드라인, 조사활동비 지급기준, 복무 기준 등
- 권고한 진정사건 관리를 위한 지침 수립 및 점검
- 월별 진정사건처리실적 분석(단 하반기부터는 분기별 분석으로 전환)
- 월별 장기미결사건 분석
- 중요사건 관리
- 중요사건, 긴급구제 사건 등 중량감 있는 사건의 적기 처리

□ 성과 목표

- 본부 내 팀간 통합적·유기적 업무 수행 체계 확립
- 진정사건 처리 현황의 월별 또는 분기별 분석

□ 08년도 추진 실적

- 월별 진정사건처리실적 분석
- 월별 장기미결사건 분석
- 중요사건에 대한 긴급구제, 입장표명, 권고 등
- 2개 소위 운영, 국회 대응, 통계 관리 등
- 본부 업무계획 수립, 평가·총괄
- 본부 워크숍 실시
- 본부 조사관 전문성 제고 교육 실시

□ 평가

- 월별 진정사건처리실적 분석 및 월별 장기미결사건 분석과 지속적 관리를 통하여 사건처리를 신속하게 보다 많은 사건을 처리할 수 있었으며, 그 결과로서 조사중인 '장기미결사건'의 수를 대폭 감축시킬 수 있었음.
- 「인권지킴이 운영 지침」 제정을 통하여 인권지킴이 활동에 대한 체계를 확립하였으며, 동 지침에 인권지킴이 활동에 대한 각종 조언, 요구 및 질의 등을 포함함으로써 직원의 만족도를 제고하였음.
- 이외에도 본부 소관 사무 중 종합적이고 총괄적으로 처리할 기획 사무를 주관함으로써 최소한 본부 내의 업무 처리에 있어서는 일원화된 체계를 확립할 수 있었음.

□ 2009년도 업무추진시 참조사항

- 월별 진정사건처리실적 분석의 경우 잦은 분석으로 업무량이 증가하고 있어 하반기에는 분기별 분석으로 전환 추진

나. 2009년도 업무계획

2-1-①

학교폭력 예방 및 학생안전권 확보

□ 추진배경 및 목적

- 학생·교사는 물론 학부모들의 중요한 학교인권 문제 중 핵심사안은 다양하게 발생하는 학교폭력 및 그로인해 파생되는 인권문제임.
- 학교폭력 피해자(가해자)들은 학교생활에서 사회·정서·학습적 부적응 현상은 물론 성인에 이르기까지 부정적인 영향이 지속되고, 그로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할 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의 스트레스로 작용
- 그동안 인권위는 관련법률·제도·사례 등의 파악을 통한 근본적인 예방책 마련을 통한 접근보다는 진정사건 위주로 처리해 왔는 바, 보다 근본적인 접근·검토를 통한 제도·관행적 개선방안 마련 필요
 - 현행 관련법령의 규정화 및 시스템에도 불구하고, 형식적·관행적이고 학교 당국 중심적 접근방식에 대한 실태파악 및 검토를 통한 문제점 확인·모색
- 또한, 학내외에서 발생하는 학생의 각종 안전사고 문제는 학생에게 보장되고 확보되어야 할 권리임에도, 안전불감적인 관행과 인식부족 등으로 안전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그 처리 과정에서도 학교당국의 소극적 대응 등으로 새로운 문제로 야기됨에 따라 근본적 제도·관행 검토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학교폭력 예방>

- 학교폭력 유형·사례 및 발생원인 분석
 - 신체적 폭행 및 가혹행위, 집단 따돌림(왕따), 금품갈취, 언어학대 및 괴롭힘 등 유형이 점차 다양화해지고, 저연령화 및 집단화·흉폭화 추세
 - 교육당국, 시민단체, 인권위 등 발생사례, 상담사례, 진정사례 등 파악 분석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등 각종 학교관련 법령체계 및 학교폭력 관련 법원 및 현재판례 분석, 관련 보고서 및 논문 검토
 - 현행 관련법령의 제도적 문제점 파악(학교폭력 개념 등)

- 학교당국과 현장에서 학교폭력 예방 및 처리실태 파악·문제점 검토
 - 피해 및 가해학생 조치사항, 교사 및 교육청 등 학교 당국의 조치실태
 - 가해자 및 피해자, 당사자 부모, 교장·교사 및 교육청 관계자 면담
 - 교과부 등 교육당국의 학교폭력 관련 계획 수립내용 및 입장
 - 학교폭력대책기획위원회 및 지역위원회 설치 기능별 운영실태
 - 자치위원회 구성원 현황 파악 및 운영실태
 -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 운영 및 집단상담 및 학급단위 프로그램 운영 실태
 - 학교별 전문상담실 운영 및 상당교사 지정 운영 실태
 -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시 현황 및 실태, 피해자 보호조치 의무 이행실태
 -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후속조치 사항,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실태
 - 가해학생의 선도·징계제도의 실태, 비밀누설금지 사항 등 실태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지원 기반체계 및 실태 등 기타 관련
관행적 사항
- 학교폭력 쟁점사항 파악과 문제점 검토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 개최
- 선진 외국 학교폭력 대응제도 실태 파악
- 학교폭력 예방대책 문제점 및 개선방안 공개 청문회(혹은 토론회) 개최
- 학교교육정책협의회(시도 교육청) 및 아동권 전문위원회 상정 논의
- 관련 제도·정책 및 관행상의 문제점 파악 보고서 작성·상정
- 교과부 및 교육청 등과의 정책협의 내지 개선권고

<학생의 안전권 확보>

- 학내외 각종 안전사고 사례·유형 및 문제적 파악
 - 학내 각종 안전시설 미화보, 놀이시설 및 운동시설, 등하교길 통학로
미화보(스크울 존), 재개발 및 주변건설현장으로부터 안전, 교통안전대책,
체육시간 안전보호의무 소홀 및 방치 등
 - 교육당국의 사고사례 및 조치사항 파악
-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 관한 법률 등 각종 관련법령 및 관련판례분석
- 학교당국 안전사고 예방 및 조치에 관한 사항 실태파악
 - 학교의 책무 이행실태, 학교시설 안전점검 및 시설관리기준 이행실태
 - 학교 안전교육의 실태, 학교안전사고공제사업 실제 이행 및 관련 학부모
대응관계(관련자 면담 등) 등 학교당국의 대처방식의 실제

※ 학교폭력 예방사업과 병행 추진하고, 실태조사 시 학생인권 현안인권에 대하여도 병행 추진

※ 인권위, 교육 당국, 교원단체, 관련 공공기관 등과 공동사업으로 추진 검토

○ 추진 일정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방향설정 및 전문가 간담회	2월	
	세부사업계획 수립	3~4월	
2/4분기	교육청 등과 협의 실태(직권)조사 실시	4월	2회(분기별)
	사례분석, 법령체계 검토, 판례분석	5월	(8~10개교)
	외국 사례 제도 분석	6월	
3/4분기	2/4분기 추진계획과 동일하게 추진	7월	
		8월	
		9월	
4/4분기	공개 청문회(토론회) 개최	10월	
	실태조사(직권)보고서 작성	11월	
	아동권 전문위원회 등 전문가 간담회	12월	
2010년 1/4	학교폭력 예방 등 학생인권 제도개선 보고서 작성 · 위원회 상정	1월	
	위원회 권고(혹은 정책협의 등)	2월	

□ 소요예산

○ 총 소요 : 약 900만원

- 전문가 자문료, 간담회 및 청문회(토론회) 자료집, 회의수당, 현수막 등 일반수용비성 경비 : 600만원, 실태조사 국내여비 : 200만원
- 간담회 등 업무추진비 : 100만원

□ 검토사항

○ 성과지표

- 각 분야별 실행방안의 적합성 및 실효성, 사회적 파급효과
- 기획조사 기획안 및 조사실행 적정성
- 전문가 및 관계기관 정책협의의 적실성

※ 본 사업은 성과목표 2-1에 해당하며, 다른 정책과제, 인권교육, 관계기관 협의 업무 등과 통합적으로 수행할 때 보다 효과적임.

2-1-②

학교운영에 학생 참여와 학생 자치권 보장

□ 추진배경 및 목적

-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으로 폐쇄적이었던 학교운영이 구성원의 민주적 참여를 바탕으로 중요한 정책사항 등을 결정하는 학교공동체를 형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나, 학교운영의 당사자이자 학교교육의 주인공인 학생의 참여가 오늘까지도 배제된 것이 현실임.
- 각 학교별로 학교생활규정(선도규정)에 근거하여 학생자치회가 활동하고 있으나 학생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고 있어 대부분의 학생들은 학생자치회에 학생인권 보장에 대한 기대를 하지 않고 있는 현실임. 학생들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학생회 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의 자치권이 전제되어야 함.

□ 주요내용 및 세부 추진계획

- 학교운영의 당사자이자 학교교육의 주인공인 학생 참여 절실
 -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대표의 참여제도화
 -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를 고려한 배려 필요
 - 학생회 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의 자치권 보장
 - 비인권적인 학생자치회 운영규정 개정
 - 학생회 구성을 위한 절차 등 제도적 보완
 - 학교생활규정 제정에 학생대표의 참여와 학생 동의절차 마련
 - 학교운영에 학생 참여와 학생 자치권 보장을 위한 기획조사 추진
 - 기초조사 : 초중등교육법, 같은 법 시행령, 각 시·도조례, 각급 학교 교칙 및 생활규정 분석
 - 본안조사 : 기초조사를 토대로 본안조사 대상 선정 등 기획조사 실시
- ※ 인권위, 교육 당국, N해 등과 기획단계에서부터 공동사업으로 추진 검토

○ 추진일정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1. 학교운영에 학생 참여와 학생 자치권 보장을 위한 각종 규정 분석 -초중등교육법, 같은 법 시행령, 각 시·도조례, 각급 학교 교칙 및 생활규정 분석 2. 학교운영에 학생 참여와 학생 자치권 보장을 위한 홈페이지를 통한 의견수렴 실시 3. 전문가간담회 실시 -각종 규정에 따른 피해사례 수집	2008. 2~4월	
2/4분기	1. 본안조사 -전국 시·도교육청과 협조하여 피해사례 중심으로 각종 규정 적용 실태 파악	2008. 5~6월	
3/4분기	1. 본안조사 대상 학교장 및 생활지도부장 회의 소집 -의견수렴 및 자발적 시정사항 수렴 등 2. 보고서 작성 3. 전문가 및 관계기관협의회 개최 4. 종합보고서 작성(권고)	2008. 6~8월	

□ 소요예산

- 국내여비 등으로 조치 가능.

□ 검토사항

- 의견수렴과정에서 진정사건으로 동시 접수될 경우 기획조사를 직권조사로 변경하여 추진.
- 성과지표
 - 기획조사 기획안 및 조사실행 적정성
 - 전문가 및 관계기관 정책협의의 적실성
 - 보고서 타당성
 - 후속조치의 적절성

□ 추진배경 및 목적

- 정보화로 인하여 다량의 개인정보가 유통되고 있으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부족과 관리수준의 미흡으로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 세계적으로 정보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IMD에서 제기한 한국의 사이버보호지수에서는 2007년 22위에서 2008년 45위로 하락하여 정보보호에 관한 국가적 지원과 관심이 필요한 상황임.
- 현재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의 개인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을 앞두고 국가사회 전반에 걸쳐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높이는 “정보인권 기준” 수립이 절실한 실정임.

□ 주요내용 및 세부 추진계획

- 온라인상의 정보인권 실태에 대한 연구 및 분석 (2009. 1 ~ 2010. 12)
 - 온라인상의 개인정보 수집, 저장 및 관리, 이용 및 제공, 파기 등의 개인정보 모든 생명주기단계의 각 단계별 개인정보 침해유형 분석 및 온라인상의 정보보호 체계 분석
 -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주요 선진국의 개인정보보호 사례 등을 적극 검토하여 국내에 벤치마킹 실시
- 국내·외 정보인권침해 관련 판례·사례 수집 분석 (2010. 1 ~ 2011. 12)
 - 국내·외 각종 정보인권침해 사례, 우리 위원회의 인용권고 사례 및 민간차원의 개인정보침해의 사례 등에 대한 조사 및 유형별 분석
 - 국내·외, 주요 선진국의 제도·법령·지침·판례 등 수집 및 분석
- 유비쿼터스 정보화사회에 수반되는 정보 인권 기준 수립 (2010. 1 ~ 2011. 12)
 - 온라인상의 인적정보, 경제정보, 사회정보 등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 요인별 침해방법 분석, 정보보호기술 동향 분석, 개인정보보호 표준화 및 개인정보 관리모델 적용사례 등을 분석하여 국민이 보장 받아야 할 기본적인 정보인권 기준 수립

○ 추진일정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온라인상의 개인정보 인권침해 자료수집 (생명주기단계별 인권침해 유형별)	2월 ~3월	
2/4분기	온라인상의 정보보호체계 자료수집	4월 ~ 5월	
	주요 선진국가의 사례 등 자료수집	6월	
3/4분기	국제인권기구 및 회원국들의 정보인권 관련 입법, 지침, 판례 등 수집 및 분석	7월~ 8월	
	개인정보보호 침해요인별 사례 분석	9월	
4/4분기	국내.외 정보인권침해 사례 수집 분석	10월	
	정보인권침해 관련 전문가 의견 수렴	11월	

□ 소요예산

- 전문가 자문료, 간담회 등의 소요경비 : 약 100만원

□ 검토사항

○ 성과지표

- 정보인권 보호를 위한 인권침해 예방 및 인권의식 제고
- 유비쿼터스 환경에서의 국내.외 정보인권 실태 파악의 적절성
- 인터넷, 유비쿼터스 환경의 국내.외 정보인권 보호수준 분석의 적절성
- 국내 환경에 적합한 최적의 정보인권보호정책 수립 방향 제시

※ 본 사업은 성과목표 1-4에 해당하며, 다른 정책과제, 인권교육, 관계기관 협의 업무 등과 통합적으로 수행할 때 보다 효과적임.

1-4-②

지자체의 CCTV 설치·운영 실태와 인권침해 최소화 방안 검토

□ 추진배경 및 목적

- 우리 위원회는 2004. 4. 19. 공공기관의 CCTV 등 무인단속장비의 설치·운영 관련 정책 개선 권고
 - CCTV 등을 통한 개인정보 취득 시 적별절차, 침해의 최소성 원칙 준수
 - CCTV 등 무인단속장비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기준 마련
- 정부 등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개정하여 CCTV의 설치 절차, 운용 기준, 사무 위탁 등에 관한 규정 마련
- 그러나 지자체, 경찰 등이 범죄예방 등을 목적으로 주택가에 많은 CCTV를 설치 운영하며, 이미 마련된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기준의 미비점 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됨
- ※ 동아일보(2008. 11. 14.), “가정집 안방까지 볼 수 있는 방법 CCTV 상황실” : 순찰인력의 부족으로 용역회사 직원이 모니터링, 사생활 침해 논란 등
- 이에, CCTV를 많이 설치 운영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그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운영상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

□ 주요내용 및 세부 추진계획(중기전망을 토대로 단계별 추진전략, 구체적 내용)

- 2004. 우리 위원회의 ‘공공기관의 CCTV 등 무인단속장비의 설치·운영 관련 정책 권고’ 내용 대비 현 관련 법령 및 정부 가이드라인의 비교 평가, 문제점 검토
- 3~4개 지자체를 선정하여 CCTV 설치·운영 실태 파악
 - 설치 목적 및 현황(설치 대수, 기능, 설치 지역, 배치 기준 등)
 - 설치 시 주민 참여 등 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
 - 모니터링 방법 및 자료 관리 실태(인원, 장소, 활용 등)
 - 설치 후 활용 실태, 범죄 예방 효과
 - 운영 상 애로 사항 등
- 실태조사 결과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마련
 - 인권침해 최소화 방안 검토

- 설치 당사자 및 관련 전문가 의견 수렴 등

- 추진 일정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관련 현황 파악	2월	
	세부 추진 계획 수립	3월	
2/4분기	현행 제도 분석, 실태조사 대상 선정	4월 ~ 5월	
	실태조사	6월	
3/4분기	실태조사	7월	
	실태조사 결과 분석	8월	
4/4분기	전문가 의견 수렴 등 대안 마련 ※ 지자체, 언론, 주민, 전문가 등 의견 수렴	9~10월	

□ 소요예산

- 총소요 : 약 2백만원
 - 실태조사 여비 등(1백만원)
 - 전문가 간담회 등(1백만원)

□ 검토사항

- 성과지표
 - 실태조사의 적절성
 - 문제점 파악 및 대안 마련의 적절성

일반사업

사법기관 강제집행과정에서 인권침해 개선방안

□ 추진배경 및 목적

- 사법기관에서 동산 압류 등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사전절차나 준비의 미흡 등으로 국민의 저항에 부딪치고 이 과정에서 국가기관과 국민 간에 욕설, 폭행, 사생활 침해 등의 다양한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강제집행 관련 연구조사는 전무한 상황임.
- 위원회에 강제집행 과정과 관련된 진정이 적지 않게 접수되는 상황에서 인권침해를 발생시키는 요인을 파악하고 그 방지를 위한 대안을 도출하고자 함

□ 주요내용 및 세부 추진계획

- 강제집행 관련 실태조사를 통해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강제집행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등 인권침해 방지 대안 도출
- 09년도 구체적 내용
 - 진정사건 사례 및 처리 결과 분석
 - 관련 법규 등 수집, 분석
 - 쟁점 정리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실무자, 전문가 간담회 등 개최
- 추진 일정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진정사건 사례 조사, 분석	2월~3월	
	법원 민원 수집, 분석		
2/4분기	관련 법령 조사	4~5월	
	선진국 사례 검토	5월~6월	
3/4분기	업무 담당자(집행관 중심) 간담회 개최	7월	
	전문가 간담회 개최	8~9월	
4/4분기	대안 마련	10~11월	

□ 소요예산

- 총소요 : 약 300만원
 - 실무자 간담회(150만원)

- 전문가 간담회(150만원)

□ 검토 사항

- 성과지표
 - 조사결과보고서의 적정성
 - 법·제도관행 등의 개선방안 마련 및 반영

□ 추진배경 및 목적

- 위원회의 조사 활동은 피해자를 직접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내포된 제도상의 문제해결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사회의 전반적인 인권상황 개선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기능
- 그런데 최근 일부에서 위원회 조사 및 심의결과의 신뢰성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 시급
- 따라서 사건의 폭주와 조사인력 부족 등 한계가 있지만 위원회 조사 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노력은 보다 쉽고 빠르고 신뢰성 있는 권리구제 서비스 제공뿐만 아니라 기획조사 활성화를 위해서도 필수적임

□ 주요내용 및 세부 추진계획

- 당사자 의견진술기회 부여 확대
 - 법 제46조에는 인용 시 피진정인에게 의견진술기회 부여 의무화(이 경우 당사자에게도 의견진술 부여 가능)토록 명문화되어 있으나 관행상 징계이상의 사안에만 이를 적용
 - 이는 절차하자 주장 시 대응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장차법의 시행으로 위원회 결정 다툼 시 문제의 심각성 더욱 심화
 - 다만, 위원회(소위포함) 심의안건의 폭주에 대한 대책 필요
- 상임위원 종결제도 확대
 - 충실한 심의를 위해서는 소위 상정안건 최소화가 필요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는 상임위원 또는 사무처 종결처리 필요
 - 현재 각하사건 중 일부에 대하여 상임위원 종결 처리(조사규칙 제 19조제2항), 기각 사건의 경우 일부 관심 사건을 제외하고는 상임위원께 보고 없이 소위에 상정
 - 각하사건 종결은 사무처에 위임하고, 기각사건에 대하여는 상임위원 종결 추진, 다만, 필요시 각각 상임위원 또는 소위에 상정하는 방안 병행
- 신속사건처리시스템 마련
 - 개별사건조사에 매몰되는 조사경향을 지양하고 기획조사 활성화를 위해

사건 분류단계에서부터 상임위원이 관여하여 신속처리 사건과 심도 있는 조사 필요 사건을 구분

- 예를 들면 접수, 배당되는 모든 사건에 대해 예비조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하여 상임위원의 검토를 득한 후 본격 조사를 실시도록 하는 조사절차 마련

○ 추진 일정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조사시스템 개선방안 수립	2월	
	조사규칙 개정시행	3월	

□ 소요예산

- 총 소요 : 없음

□ 검토사항

○ 성과지표

- 조사규칙 개정의 적절성
- 개정에 따른 기대효과 달성도

<붙임 1>

2008년도 침해진정사건 처리 실적

(2008년은 12.9.까지 통계임)

1. 연도별 침해 진정사건 접수 현황 (침해사건, 단위: 건)

연도 (사건 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12월9일)
27,720	2,214	3,041	4,627	4,199	3,334	5,067	4,619

2. 2008년 월별 침해 진정사건 접수 현황(단위: 건)

년도	합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08 (12월9일)	4,619	391	299	341	433	403	413	528	428	399	523	364	97
2007	5,067	305	317	437	334	402	427	505	525	402	552	480	381

3. 2008년 침해사건 중 침해본부 팀별 송부된 월별 사건 현황(단위: 건)

구분	합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침해구제 총괄팀	518	29	27	35	57	31	27	48	36	42	93	76	17
침해1팀	996	84	67	67	67	84	113	189	115	87	66	53	4
침해2팀	902	119	89	108	57	68	60	88	75	70	78	73	17
침해3팀	525	45	46	51	70	64	74	49	38	22	43	15	8

4. 침해 진정사건 침해구제본부 송부 현황(단위: 건)

구 분	본부계	총괄팀	1팀	2팀	3팀	미배정
2008.12.9. 까지	2,980	520	1,004	921	531	4
2007년	3,883	617	1,224	1,567	475	-

5. 팀별 진정사건 종결 현황(단위: 건)

구 分	본부계	총괄팀	1팀	2팀	3팀
2008.12.9. 까지	3,253	629	887	1,155	582
2007년	3,689	546	1,289	1,505	349

6. 팀별 미결 사건 현황(단위: 건)

구 분	본부계	총괄팀	1팀	2팀	3팀	미배정
2008.12.9. 까지	946	141	447	124	230	4
2007년	1,128	209	302	357	260	-

7. 팀별 진정사건 인용 실적(단위: 건)

구 분	본부계	총괄팀	1팀	2팀	3팀
2008.12.9. 까지	229	50	82	32	65
2007년	228	36	119	36	37

8. 팀별 진정사건 조사 중 해결 현황(단위: 건)

구 분	본부계	총괄팀	1팀	2팀	3팀
2008.12.9. 까지	562	127	88	335	12
2007년	1,034	84	459	471	20

5. 장기미결사건 분석(단위: 건)

구 分	2007년 말			2008.12.9.까지			9월 이상 증감
	9월-1년	1년이상	총계	9월-1년	1년이상	총계	
본부	101	113	214	66	23	89	△ 125
총괄팀	24	46	70	1	2	3	△ 67
1팀	30	34	64	19	5	24	△ 40
2팀	5	2	7	2	-	2	△ 5
3팀	42	31	73	44	16	60	△ 13

2009년도 업무계획

2008. 12.. .

**침해구제본부
침해구제 1팀**

I. 2008년도 업무평가

□ 사업과제

-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건처리
- 주요 현안에 대한 능동적 대응
- 기획조사 강화를 통한 인권침해 사전 예방활동 강화 등

□ 총 평

1. 대내외 환경 변화

- 새 정부 출범이후 자유권적 기본권이 인권의 주요 쟁점으로 회귀
- 특히, 미국산 쇠고기 수입관련 촛불집회 등으로 집회 및 시위와 이에 대한 경찰의 대응이 주요 사회적 이슈화
- 이에 따라, 경찰관련 진정이 지속적으로 접수되며 긴급히 대응해야 할 현안이 증가하여 팀 주요 업무 조정 불가피

2. 평가

1) 긍정적 측면

- 직권조사, 인권지킴이 활동 등 사회적 현안에 대한 신속한 대처
 - 전의경 구타 및 가혹행위 직권조사
 - 촛불집회 관련 주요 피해사례 직권조사
 - 촛불집회 인권지킴이 활동 추진
 - 서울공항 집회금지통고 긴급구제조치 권고
 - 민주노총 건물 붕쇄관련 긴급구제신청의 건에 대한 초동조사 및 권고
 - 여성피의자 속옷탈의사건 재발방지 권고 등 - 속옷을 입히는 권리의 존중
- 군 사건조사에 있어서 유사기관과 차별화 - 사유설 유사사건처 lý에 대한 윤리-
 - 사관학교 3금제도 관련 제도개선 권고
 - 국방부 불온서적관련 의견표명
 - 권익위에서 기각 및 일부인용한 동일진정사건 적극적 권고

구 분	권 익 위	국 가 인 권 위
이경남 사건 (07진인1943)	사망원인 재조사후 신청인에 통지할 것(해당부대 불수용)	국방장관에게 전공사상 분류기준개성 및 순직재심의, 관계간부 징계, 법률구조(전부수용)
김승철 사건 (07진인4219)	기각: 조사결과 안내 종결	국방장관 전공사상분류기준 개정, 순직심의, 법률구조(전부수용)
김현수 사건 (08진인0167)	행정보급관 책임성 인정	대대장/중대장 책임성 인정 군사령관에게 인권교육 권고(수용)

2) 미흡한 점

- 촛불집회 직권조사, 집회 현장 점검 등 업무부담으로 당초 계획된 사업의 추진 지연 및 일부사업 중단
- 진정사건 처리 지연 및 장기미결사건 발생
 - 150일 경과 24건, 180일 경과 17건 (2008.12.4. 기준)

* 업무 일부조정 내역

- 사업 중단 3건 : 피의자 접견권 제한 직권조사, 경찰서 유치장 방문조사, 철도공안 수사과정상의 인권침해 실태조사
- 사업 대체 2건 : 수사과정에서의 아동·청소년 인권보장 → 전의경 직권조사, 석방지휘업무 처리지연 관행 시정을 위한 직권조사 → 촛불집회 직권조사

당초 업무계획	조정안	비고
① 수사과정에서의 아동·청소년 인권보장	'전의경 직권조사'로 대체	완료
② 석방지휘업무 처리지연 관행 시정을 위한 직권조사	'촛불집회 직권조사'로 대체	완료
③ 피의자(피고인) 접견권 제한 직권조사	사업 중단	-
④ 해양경찰청 유치장 방문조사	사업 유지	완료
⑤ 경찰서 유치장 방문조사	사업 중단	-
⑥ 군 영창 방문조사	사업 유지	완료
⑦ 검찰 구치감, 보호실 방문조사	사업 유지	완료
⑧ 철도공안 수사과정상의 인권침해 실태조사	사업 중단	-
⑨ 국제인권기구 수사관련 판례 등 수집, 번역 및 분석	분기 1회 발표회 개최로 조정	완료
⑩ 인권단체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강화	사업 유지	완료

□ 사업별 평가 : 다음장에 계속

□ 사업별 평가

1. 전의경 구타·가혹행위 직권조사

□ 추진배경 및 내외 환경

- 2007. 3. 경찰청장 등에게 전·의경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정책권고를 한 바 있음.
- 그러나 선임 대원의 구타 및 가혹행위로 전경대원이 마을버스 운전사를 협박하여 방송사로 돌진한 사건이 발생, 우리 위원회에도 전·의경 구타 및 가혹행위 사건이 동시에 7건 접수되어 전의경 인권상황에 대한 직권조사를 결정.

□ 목표

- 직권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타 및 가혹행위가 감소되지 않는 원인, 실상 등을 외부에 공개하여 구타·가혹행위 근절을 위한 대안 마련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조사대상 : 서울지방경찰청(4기동대, 특수기동대, 양천경찰서 방순대), 대구지방 경찰청(중부경찰서, 수성경찰서 방순대), 경기지방경찰청(광주경찰서 경비교통과 등), 충남지방경찰청(논산경찰서 기동타격대 등) 등
- 조사 내용
 - 전경부대내 구타 및 가혹행위 여부 등

□ 추진 일정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2/4분기	직권조사 결정 및 통지	4월	
	자료입수 및 검토	5월	
	직권조사 실시	6월	
3/4분기	보강조사	7월	
	조사결과 보고서 작성	8월	
	전원위 상정 및 결정문 통지 등	9월~10월	

□ 성과 지표

- 당초 조사일정 준수 여부
- 조사 마무리 후, 권고 등 조치결과 실적 및 해당 기관 이행 여부

□ 추진 실적

- 4. 3. 직권조사 결정(제5차 침해구제제1위원회)
- 5. 8. 직권조사 추가결정(제7차 침해구제제1위원회)
- 5. 21. ~ 6. 18. 직권조사 실시(서울지방경찰청 3개 부대, 충남지방지방경찰청 1개 부대, 대구지방경찰청 2개 부대, 경기지방경찰청 1개 부대)
- 7. 7. ~ 8. 15. 보강조사, 조사결과보고서 작성
- 8. 16. ~ 9. 8. 소위 및 전원이 상정 / 전원위 결정
- 10. 20. 결정문 통지

□ 평가

- 직권조사 실시 초기에는 조사일정이 원활히 진행되었으나, 촛불집회 직권조사 등에 따른 업무 부담 가중으로 일부조사 일정지연
- 당초 계획에 없던 직권조사 실시로 연초 계획된 '수사과정에서의 아동·청소년 인권보장' 사업 중단 초래
- 조사결과에 대한 언론브리핑 등을 실시하고 KBS, MBC, SBS 등 주요방송사 및 언론기관에서 비중있게 방송보도하여 전의경 구타 가혹행위 근절의 중요성 및 대안제시에 대하여 대국민 주목을 받았다고 평가됨

□ 2009년도 업무추진시 참조사항

- 경찰청 측의 권고결정에 대한 이행여부 점검
- 경찰청 측의 자체 전의경인권교육에 대한 지원사업 필요

2. 촛불집회 직권조사

□ 추진배경 및 내외 환경

- '08. 5. 2.부터 광우병 쇠고기 협상 관련 촛불집회가 이어졌으며, 집회 및 시위와 이에 대한 경찰의 대응과정에서 인권침해 논란 지속 제기
- 촛불집회관련 진정사건이 100여건 이상 접수되고 경찰 진압과정에서 상당수가 부상당한 사실이 확인된 바, 부상 경위와 경찰의 진압 상황에 대한 조사 필요성 제기

□ 목표

- 집회 및 시위과정에서의 집회 참가자 인권침해 상황 실태파악
- 평화적 집회 보장을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과제 도출하여 권고 등 조치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조사대상
 - 사회적으로 중요한 피해사례로 언급되고 있는 사건 중 우리 위원회에 진정이 제기되지 않은 사건 등
- 조사내용
 - 경찰의 집회 및 시위 대처과정에서의 과잉진압 여부
 - 경찰장비·장구의 과도한 사용 여부
 - 집회 원천봉쇄 등 집회의 자유 침해 여부 등

□ 추진 일정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3/4분기	직권조사 결정	7월	
	피해자 조사, 피진정인 조사 1차 조사 마무리	9월	
	전위위 결정 / 언론보도	10. 27	
4/4분기	결정문 통지 등 후속조치	12월	

□ 성과 지표

- 당초 조사일정 준수 여부
- 조사 마무리 후, 권고 등 조치결과 실적 및 해당 기관 이행 여부

□ 추진 실적

- '08. 7. 11. 직권조사 결정
- '08. 7. 17.부터 매주 2회 조사방향 논의
 - 사건성이 없는 사건은 각하시키고 정책권고내용에 포함시켜 조사
- '08. 8. 15.
 - 개별 진정사건 피해자 진술청취 등 피해사실 확인
 - 피진정 기관에 관련자료 제출 요구
- '08. 9. 조사결과보고서 작성
- '08. 10. 27. 전원위 결정
- '08. 12. 4. 현재, 결정문 작성 중

□ 평가

- 현안 사안에 대한 직권조사로 사회적 관심 제고하였으나, 일부에서는 소극적인 사후조치라는 비판 및 당초 계획에 없던 직권조사 실시로 연초 계획된 '석방자 휘업무 처리지연 관행 시정을 위한 직권조사' 사업 중단 초래
- 촛불집회 직권조사의 신속한 마무리를 위하여 팀내 조사관 집중 투입으로 일반 진정사건 처리 지연되고 있어 사건처리 실적 부진원인 초래
- 다만, 언론브리핑 등을 통하여 대국민에게 집회시위의 자유보호 강화의 필요성 및 경찰진압의 적법절차 준수의 필요성 호소
 - 누각된 진정에 대한 평가. 인권단체연대회의 진정을 보아야 핵심 .
 - 해설부

□ 2009년도 업무추진시 참조사항

- 권고이후 경찰청측의 권고이행 여부 확인
- 결정문 영문번역 국제인권기구에 제출하고 필요시 국제회의에 사례발표 추진
 - 속도를 더해나가고 - 정보가족의 의견을 듣고자.
 - 소위에서 싱사 과정에서 누각여론 부정이 있으니

(일본적인
집회법이라)
결정내용에 흡수될 수 있는 우려여부
양해를 구했습니다.

- 현장에 개입하지마라. 물리적 충돌금지
- 기록로는 안한다.

3. 해양경찰청 유치장 방문조사

□ 추진배경 및 내외 환경

- 인권위 출범이후 해양경찰청 유치장 관련 방문조사 활동은 거의 전무
 - 전국 13개 해양경찰서(3개 청)가 있어 특유한 인권쟁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진정접수는 미미함
※ 위원회 출범이후 현재까지 해양경찰청대상 진정사건 총 9건 접수(차별 5건, 침해 4건)
- 방문조사를 통한 유치장 시설, 환경, 처우 등에 대한 인권상황 실태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개선방안 모색

□ 목표

- 유치장 인권상황 파악 및 개선방안 마련
- 해양경찰서 유치장 관련 인권침해 요소 사전 예방
 - 관계기관과 정책 협의 및 인권교육 자료로 활용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조사대상 : 해양경찰서 유치장 2개소 방문조사 실시
- 조사 내용
 - 1) 인권침해 발생가능성 조사
 - 신체의 자유 침해 여부(석방지연, 알몸신체검사, 과도한 장구 사용 등)
 - 변호인 접견권, 의료진료권, 인권위 진정권 보호 등
 - 2) 수용자 시설환경 및 처우
 - 수용시설 환경 및 수용자 처우(식사, 화장실, 세면실 사용 등)

□ 추진 일정

구 분	추진 실적	세부일정	비 고
2/4분기	방문조사 대상기관 선정, 관련 자료 수집	7~8월	
3/4분기	방문조사 계획 수립	9월	
4/4분기	인천해경/ 부산해경 방문조사	10.31.~11.3	
	조사결과보고서 작성	11.	
	소위보고 및 결과통지	12월 초	

□ 성과 지표

- 권고 등 조치결과의 실적 및 해당 기관 이행 여부
- 조사결과의 인권교육 자료 등 대내외 활용 여부

□ 추진 실적

- '08. 9. 방문조사 기초자료 수집
- '08. 10. 방문조사 계획 보고
- '08.10.31.~11.3 방문조사 실시
 - 인천해양경찰서, 부산해양경찰서
- '08. 11. 조사결과보고서 작성
- '08. 12.. 소위보고 및 결과통지

□ 평가

- 방문조사 대상 유치장 2개소 모두 유치인이 없어 유치인 면담조사 미실시로 현장감 있는 조사에 한계
- 인권위 최초 해양경찰서 유치장 방문조사로 해양경찰청 인권의식 고취
- 방문조사과정에 드러난 변호인접견권, 조도문제, 인권위 진정안내 등 현장조치가 가능한 부분은 상당부분 개선이 되어 인권침해 사전예방적 본래 목적 달성
 - 인천해양경찰서 변호인접견실 아크릴 투명창 설치, 유치인보호실 조도 개선, 부산 진정안내문 유치인이 잘보이는 위치로 이동 부착 등
- 외국어 진정안내문 필요, CC-TV 유치인보호관 모니터링 가능하도록 개선 권고 등 향후 개선사항 공유

□ 2009년도 업무추진시 참조사항

- 향후 유치장 방문 · 기획조사 참고자료로 활용

4. 군 영창 방문조사

□ 추진배경 및 내외 환경

- '07년도 군 영창 3개소 방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나, 군 특성상 일반 교도소보다 외부의 접근이 용이치 않으므로 인권침해 사전 예방을 위한 지속적 확인 필요
- 방문조사를 통한 구금 시설내 환경, 처우 등에 대한 인권실태 지속 점검

□ 목표

- 군 영창내 인권침해 요소 사전 예방 및 인권위 권고 사항 현장 이행 여부 점검
- 조사결과를 토대로 관계기관과의 정책협의 및 인권교육 자료로 활용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조사대상 : 국방부 산하 군 영창 2개소
- 조사내용
 - 군 영창 기본시설의 관리 및 운영 실태
 - 과거 인권위 조사결과 후속조치 사항에 대한 현장 이행 노력과 성과

□ 추진 일정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3/4분기	방문조사 대상기관 선정, 관련 자료 준비	8~9월	
	방문조사 실시, 조사보고서 작성	10월~11월	
3/4분기	소위보고 및 결과통지	12월 초	

□ 성과 지표

- 당초 방문조사 일정 준수 여부
- 권고 등 조치결과의 실적 및 해당 기관 이행 여부
- 조사결과의 인권교육 자료 등 대내외 활용 여부

□ 추진 실적

- '08. 9. 방문조사 기초자료 수집
- '08. 10. 방문조사 계획 보고
- '08.10.22~10.24 방문조사 실시 : 육군수도방위사령부, 해병대 2사단
- 2008. 11. ~ 12. 조사결과보고서 작성/ 소위보고 및 결과통지

□ 평가

- 방문조사과정에 드러난 영창내 기본장비(시계, 거울, 식수통 등) 미비치 문제, 비규격 인권위진정함 및 진정서, 화장지 등 개인물품 미지급 문제 등은 현지 및 조사직후 상당부분 개선이 되어 인권침해 사전예방적인 본래 목적 달성
- 수방사 : 세면장 거울 비치, 개인식수통 지급, 비규격 진정함 교체, 화장지등 개인용품 지급, 면회실 주변 철조망 환경개선 등
- 해병대 2사단 : 취침시 체육복착용 허용, 거울 및 시계비치, 기준미달 조도 상향, 비규격 진정서 교체, 개인식탁 지급 등

□ 2009년도 업무추진시 참조사항

- 향후 군영창 및 교도소 방문·기획조사 참고자료로 활용

5. 검찰 구치감 관리·운영 방문 실태조사

□ 추진배경 및 내외 환경

- 경찰서 유치장 및 구금·보호시설의 경우 인권위의 진정 및 방문조사 등을 통한 인권상황 개선조치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음
- 검찰 구치감은 소관 업무의 관리 및 운영이 검찰, 경찰, 법무부 교정국 등으로 분화되어 있어 운영 실태에 대한 파악이 미흡함
- 구치감은 조사대기를 위한 필수적인 시설이므로, 구금 환경과 처우 등 인권상황 파악과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실태 파악 필요

□ 목표

- 구치감 관리·운영의 법규상 및 제도적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방안 모색
- 구치감내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제도적 개선과제 도출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조사대상 : 구치감 3개소(서울중앙지방검찰청,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광주지방검찰청 장흥지청)
- 조사내용
 - 구치감 관리·운영 체계
 - 교도관실, 경찰관실, 수용거실, 신체검사실 등 각종 시설 환경
 - 식사, 응급진료 등 수용자 처우 현황

□ 추진 일정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2/4분기	점검목록 등 방문조사 준비	4월	
	방문조사 실시(서울중앙지검, 창원지검 진주지청)	5~6월	
3/4분기	현지방문(장흥지청, 진주지청, 중앙지검 구치감)	7월	
	조사결과 보고서 작성	8월	
	조사결과 보고 및 후속조치	9월	

□ 성과 지표

- 당초 방문조사 일정 준수 여부
- 조사결과의 적정성과 해당 기관 이행 여부

□ 추진 실적

- '08. 4. 3. 방문조사 결정(제5차 침해구제제1위원회)
- 4월말~5월말.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과 업무협의 추진
- 5. 8., 5. 29., 6. 19., 7. 3. 진행상황 및 업무협의 경과 보고(침해구제제1위원회)
 - 구치감이 위원회법 제2조 및 제24조의 시설 방문조사 대상인지 여부
- 6월말. 구치감 점검목록 등 준비
- 7. 3. 대검찰청 감찰1과장과 대상기관 등 업무 협의
- 9. 10 ~ 19. 현지방문
- 12월 방문결과 소위보고

□ 평가

- 조사대상 여부에 대한 면밀한 자체 검토 미흡으로 방문조사대상 여부 자체에 논란 제기, 조사의 방식 변경 및 사업 추진 지연
- 구치감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및 제24조의 시설 방문조사 대상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대검찰청과 업무협의 과정에서 논란이 있어 사업 추진이 지연
- 이에 대하여 2008년 제10차 침해구제위원회에서 입법불비로 판단
- 검찰구치감의 경우 조사를 위한 단시간 대기시설로서 위원회 현장확인결과 특이점을 발견할 수 없었음.

□ 2009년도 업무추진시 참조사항

- 진정사건 조사시 참고

6. 국제인권기구 수사관련 판례 토론회

□ 추진배경 및 내외 환경

- 그동안 조사기법 함양이 인프라 구축에 집중되어, 국내 법령 및 판례와 국제 인권규범의 단순 인용 수준임
- 상황별 조사기법 및 구체적 사안별 판단을 위한 능력 배양을 통해 조사 및 권고의 질적 수준 향상 필요

□ 목표

- 국제적 인권동향과 흐름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각종 조사 및 판단 자료 수집·분석, 조사과정상 조사 기법 및 판단 기준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수정안)

- 분기별 1회 인권현안에 대한 팀내 발표 및 논의

□ 성과 지표

- 발표회 개최 횟수 및 수집 자료의 적정성

□ 추진 실적

- 인턴 활용하여 미국의 집회 및 시위관련 법령 자료 수집
- 9월 미국 집회시위 관련 법령 및 경찰 유형력 사용의 국제기준 검토 회의
-총불집회 인권침해성 여부 판단과 분석
- 10월 20일 압수수색 적정성 관련 유럽인권재판소 판례 분석회의
- 12월, 마약사범에 대한 영장없는 압수수색관련 외국 판례 분석 회의

□ 평가

- 7-9월 총불집회와 연계하기 위해 수사관련 판례에서 경찰의 유형력 사용관련한 외국 기준 검토로 변경
- 경찰의 유형력 사용관련 국제 기준의 국내 적용에 대한 검토로 총불집회 직권 조사 결정에 도움
- 수사관련 판례 연구 부족

□ 2009년도 업무추진시 참조사항

- 조사결과보고서 작성시 참조 등

7. 인권단체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 강화

□ 추진배경 및 내외 환경

- 인권위는 국가권력의 감시 기능과 함께 국민인권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바, 인권단체 및 국가기관과 지속적 협의가 요망됨
- 권리구제의 실효성, 현장감 있고 균형감각 있는 조사활동 등을 위해 인권단체 및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관계 유지 필요

□ 목표

- 인권단체 및 국가기관과 협력을 통한 인권침해의 사전적 예방 활동 강화, 위원회 권고의 내실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경찰, 검찰, 국방부 등 관계기관 간담회 개최(수시)
- 권고 등에 대한 미수용 및 미처리 사안에 대한 업무 협의(연 2회)

□ 성과 지표

- 협무협의 추진 횟수 및 타 부서 등에 대한 업무협의 추진 지원 횟수 등

□ 추진 실적

- '08. 4. 16., 경찰청 인권보호센터와 업무간담회
- '08. 5. 30. 상임위원(유남영)의 경찰청 차장과 간담회
- 2008. 5월부터 촛불집회 진행 상황 모니터링 및 현장 점검 실시
- 6. 26. 육군본부 수사단 세미나 참석
- 8. 8. 위원장님 서울지방경찰청장과 간담회
- 9. 22. 촛불집회 결정관련 경찰청 인권보호센터 업무협의
- 12. 3. 국방부 인권담당관실 및 각군본부 인권과 업무간담회 및 연중업무협의
- 12.22. 경찰청 인권보호센터 업무간담회

□ 평가

- 인권단체와의 협력 논의 및 협의가 미흡함
- 인권단체와 협력과 관련하여 위원회 타 부서의 공동 추진 필요

□ 2009년 업무추진시 참조사항

- 인권단체와 토론회, 공청회 등 개최시 수시 참여

II. 2009년도 업무계획

1-1-

경찰서 CC-TV 보관일수 등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기획조사

□ 추진배경 및 목적

- 욕설, 폭언 등 인격권 침해, 피의자 권리(미란다 원칙) 미고지, 과도한 수갑사용 등 인권침해 진정사건 증거자료로 CC-TV 녹화자료가 필수적임
- 디지털 CC-TV 장비 설치 여부, 빈번한 녹화 ^{으로} 등으로 보관일수가 경찰서별 천차만별로 요구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증거확보 대책 필요하여, 이에 대한 CC-TV 보관일수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진정사건 중 CC-TV를 증거자료로 요구받은 경찰서를 대상
 - CC-TV 보관일수가 30일 미만 사유로 제출하지 않은 경찰서
- 조사범위
 - 인권침해예방을 위한 CC-TV 보관일수 등 안내방안 강구
 - 인권위 자료 요구시 경찰서별 CC-TV 운영 매뉴얼 제출 유도
 - *보관일수, 저장용량, 삭제방침 등
- 추진 일정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1/4분기 CC-TV 자료요구 사건 파악	3월까지	
2/4분기	조사기관 선정	4월	
3/4분기	기획조사(진정사건 조사 병행) 실시 / 소위보고 등 후속조치	7~9월	

□ 소요예산 : 약 470만원 소요 예상

- 전문가 자문료 / : 60만원(20만원*3명)
- 여비 : 300만원(15만원*4명*5개소)
- 일반수용비(인쇄비 등) : 50만원
- 업무추진비(전문가, 경찰 관계자 간담회 등) : 60만원(30만*2개소)

□ 성과목표

- 기획조사를 통한 CC-TV에 의한 인권침해 사전 예방

※ 본사업 성과목표는 1-1 신체의 자유 및 구금으로부터의 자유 부분임

1-1-

군병원 정신과 입원환자 인권상황 실태조사(신규)

□ 추진배경 및 목적

- 위원회 출범이후 군병원 정신과 입원환자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파악 전무
- 민간병원 정신과 인권상황과 비교 평가 필요
- 군병원 정신과 입원환자 입원전 인권침해 사례 조사 병행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군병원 정신과 현황 파악(병동수, 환자수, 의료인수 등)
- 입원환자, 보호자, 의료종사사 설문실시(입원전 인권침해 사례 확인 병행)
- 국제기준 및 민간기준 자료 수집 확인 등
- 인권침해 문제점 및 정책과제 발굴 및 조사 구제
- 추진 일정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기관 업무협조 - 국방부 인권팀 및 국군의무사령부	3월까지	
2/4분기	위원회 진정사건 분석 등 실태조사 용역 공모 / 선정	4월	
3/4분기	실태조사 실시 / 토론회 개최	7~9월	
4/4분기	조사보고서 작성 및 권고안 마련	10~12월	

□ 소요예산: 2,060만원

- 연구용역비 : 20,000,000원
- 회의 및 간담회 경비 25,000원*8명*3회=600,000원

□ 성과 목표

- 군병원 정신과 입원환자 인권상황 실태 파악 및 인권상황 개선 추진

※ 본사업 성과목표는 1-1 신체의 자유 및 구금으로부터의 자유 부분임

가. 경찰서 유치장 방문조사(계속)

추진배경 및 목적

- 방문조사를 통한 유치장 시설·환경 및 처우 등에 대한 인권실태 확인 및 결과에 따른 개선책 마련 필요
- '06, '07년도 경찰서 유치장 각 2개소 실시결과 통보에 대한 현장에서의 이행 여부를 경찰청 합동조사 실시.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지방경찰청 산하 경찰서 유치장 2개소
 - 권고 대상 유치장, 수용인원 등 인권침해가능성이 많은 유치장
- 조사범위
 - 인권침해발생 가능성 여부, 수용자 처우 및 시설 환경
 - 인권위 방문조사 결과, 유치장 관련 권고 현장 이행여부
- 추진 일정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경찰청과 업무협조	3월까지	
2/4분기	조사기관 선정	4월	
3/4분기	방문조사 실시 / 소위보고 등 후속조치	7~9월	

소요예산 : 약 380만원 소요 예상

- 참가전문가 사례비 / : 120만원(20만원*3명*2개소)
- 여비 : 150만원(15만원*5명*2개소)
- 일반수용비(인쇄비 등) : 50만원
- 업무추진비(전문가, 경찰 관계자 간담회 등) : 60만원(30만*2개소)

성과목표

- 방문조사를 통한 인권침해 요소 사전 예방 및 조치
- 최근 3년간 조사결과 종합 검토를 통한 개선요구사항 권고 추진

나. 군교도소 방문조사(신규)

□ 추진배경 및 목적

- 방문조사를 통한 구금시설·환경 및 처우 등에 대한 인권실태 확인 및 결과에 따른 개선책 마련
- '07~'08년도 군 영창에 대해 방문조사를 실시 하여 인권침해 환경 등의 사전 예방효과를 거둬 군교도소등 구금시설에 대한 방문조사 지속 실시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국방부 군교도소 및 육군지하영창 등 2개소
- 조사범위
 - 군 교도소 및 영창 각종 기본시설 및 운영 실태, 전년도 조사결과통보에 다른 현장 전파 정도 확인 등
- 추진 일정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국방부 등과 업무협조	3월까지	
2/4분기	조사기관 선정	4월	
3/4분기	방문조사 실시 / 소위보고 등 후속조치	7~9월	

□ 소요예산 : 약 200만원 소요 예상

- 참가전문가 사례비 / : 80만원(20만원*2명*2개소)
- 여비 : 80만원(10만원*4명*2개소)
- 업무추진비(전문가, 간담회 등) : 40만원

□ 성과목표

- 방문조사를 통한 인권침해 요소 사전 예방 및 조치
- 최근 3년간 조사결과 종합 검토를 통한 개선요구사항 권고 추진